

문서번호	보건위생과-8549
결재일자	2015.5.26.
공개여부	대시민공개

주무관	식품안전담당	보건위생과장	보건소장		
최병희	양명렬	김근선	05/26 황원숙		
협 조					

유전자변형식품 지도 · 점검 계획

2015. 5.

성북구보건소
보건위생과

유전자변형식품 지도·점검 및 수거·검사 계획

유전자변형식품에 대한 안전관리 및 표시제도 준수여부 등에 대한 지도·점검 및 수거·검사를 통하여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함

1 추진개요

관련 근거

- 식품위생법 제12조의 2(유전자변경식품등의 표시)
- 식품위생법 제18조(유전자변형식품등의 안전성 평가 등)
- 2015년도 유전자변형식품 지도·점검 및 수거·검사 계획 {서울특별시 식품안전과-13902(2015.05.19.)호}

추진 방향

- 유전자변형식품의 수입제조유통단계에 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
- 가공식품등 유전자변형식품의 안전성 확보 및 소비자신뢰 제고
- 유전자변형식품의 표시적정여부의 확인

2 세부추진 계획

점검기간 : 2015. 5. 27. ~ 2015. 5. 29.

* 성북구는 서울시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실시.

지도·점검반 편성 : 1개반 3명

- 식품안전팀 직원 2명,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1명

- 대상 : 관리대상 식품을 제조·판매하는 업체 9개소
 - 식품제조가공업소 3개소(붙임 참조)
 -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6개소(붙임 참조)
- 점검반 편성 : 2인 1개조 1개반 편성(식품안전팀 직원 2명)
- 중점 점검 사항
 - 원료 수불부를 통해 관리대상 원료 사용여부 및 구분유통증명서 등 증명자료 확인
 - 관리대상 원료를 주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표시 적정여부
 -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방법의 적정성
 - GMO-free, Non-GMO 등 소비자 오인·혼동 표시 여부
 - 관리대상 원료를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로서 관련 증명자료를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원료 구입처 등을 확인하여 추적관리하고, 관련 원료는 수거검사 실시

관리대상 : 대두, 옥수수, 면화, 유채, 사탕무와 이를 주원료로 1가지 이상 사용하여 제조·가공한 식품 중에 제조·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나 외래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가공식품

3 수거·검사

- 수거·검사 대상
 - 구분유통증명서 등 표시면제 관련 증빙자료가 없는 원료
 - GMO-free, Non-GMO 및 유사표시 제품
 - 콩가루 및 옥수수가루를 원료로 사용하는 업체 제품
 - 기타 유전자변형식품 표시대상 생산업체 제품

□ 수거·검사 요령

- 제조단계 수거는 제품 및 원료를 동시에 수거
- GMO-free, Non-GMO 등 소비자를 오인하게 할 수 있는 강조표시 제품은 반드시 수거검사를 통해 허위표시 여부 확인
 - 표시 관리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표시를 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행정처분
 - 표시관리 대상 식품인 경우 정성 검사하여 검출되면 행정처분
- 수거한 제품은 신속한 검사의뢰

□ 수거량 및 검사항목

- 수거량 : 3개 제품 이상(가공식품 200g 이상, 원재료 1kg 이상)
- 검사항목 : GMO 정성검사 및 정량검사
- 검사기관 :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특수검사팀

4 행정사항

- 경미한 사항은 행정지도하고, 중요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
 - 점검 내역은 서울행정시스템에 입력
 - 표시기준 위반에 따른 처분 또는 처분의뢰 통보
- 결과 보고
 - 유전자재조합 지도.점검 및 수거.검사 결과를 서울시(식품안전과)로 실적 보고
- 지도·점검에 참여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하여 활동비 지급

- 붙임 1. 유전자변형식품 점검관련 현황(제조) 1부.
2. 유전자변형식품 점검관련 현황(즉석) 1부. 끝.